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b>실제 수익률 변동성</b> 을 감안하여 <b>2등급</b>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화차이나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차이나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한화차이나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http://www.hanwhafund.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1년 12월 12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1년 12월 23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10조좌까지 모집  
[모집(매출) 총액 : 10조원]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화자산운용(주) 본점/ 금융위원회 /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이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파생상품에 투자될 수 있으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집합투자업자의 예상과 다른 부정적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투자자는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대부분이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화자산에 투자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9.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10.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실수령금액이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1. 투자자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은 해당 투자자의 과세이익 계산에서 제외되나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 등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이익이 없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인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헷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환헷지 대상 해외자산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환헷지 거래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 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모집합투자기구 및/또는 이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분산투자가 어렵거나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협의하여 펀드의 임의해지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이 점을 고려하시어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를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이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해외의 자산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따라 일부 기재항목은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기재가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4. 2016년 4월 22일 이후 매년 결산 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 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 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투자신탁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특성(해외재간접 구조-피투자펀드 및 해외운용사 현황 등) 및 그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목차

## 요약정보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요약정보>

한화차이나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펀드코드: 76450]

투자 위험 등급 2등급 [높은 위험]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b>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b>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b>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b> 이며, 중국 주식 관련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중국 시장 위험, 환율변동 위험, 원본손실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한화차이나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 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법인 또는 중국의 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적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b>[투자전략]</b>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를 모투자신탁인 한화차이나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투자합니다. 한화차이나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은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법인 또는 중국의 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룩셈부르그에 등록된 제이피모간펀드(JPMorgan Funds)에 속한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JPMF-차이나 펀드(X(acc)) (이하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JPMF-차이나 펀드(X(acc))]												
	<table border="1"> <tr> <td>집합투자기구 명칭</td> <td>JPMF-차이나 펀드(X(acc))</td> </tr> <tr> <td>집합투자업자 명칭</td> <td>JF Asset Management Limited</td> </tr> <tr> <td>설립일</td> <td>1994년 7월 4일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년 1월 14일)</td> </tr> <tr> <td>투자대상</td> <td>자산의 최소 67%를 중국에 소재하거나 또는 중국에서 주요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 중국-홍콩 주식 교차매매 프로그램, RQFII 및 RFII 쿼터를 통하여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음. 중소형주 증권들에 투자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한정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음</td> </tr> <tr> <td>ISIN</td> <td>LU0143809738(금융투자협회 코드: K5F129101773)</td> </tr> <tr> <td>위험등급</td> <td>2등급(변동성, 20.55%(2018.6.30기준))</td> </tr> </table>	집합투자기구 명칭	JPMF-차이나 펀드(X(acc))	집합투자업자 명칭	JF Asset Management Limited	설립일	1994년 7월 4일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년 1월 14일)	투자대상	자산의 최소 67%를 중국에 소재하거나 또는 중국에서 주요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 중국-홍콩 주식 교차매매 프로그램, RQFII 및 RFII 쿼터를 통하여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음. 중소형주 증권들에 투자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한정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음	ISIN	LU0143809738(금융투자협회 코드: K5F129101773)	위험등급	2등급(변동성, 20.55%(2018.6.30기준))
	집합투자기구 명칭	JPMF-차이나 펀드(X(acc))											
	집합투자업자 명칭	JF Asset Management Limited											
	설립일	1994년 7월 4일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년 1월 14일)											
	투자대상	자산의 최소 67%를 중국에 소재하거나 또는 중국에서 주요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 중국-홍콩 주식 교차매매 프로그램, RQFII 및 RFII 쿼터를 통하여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음. 중소형주 증권들에 투자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한정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음											
	ISIN	LU0143809738(금융투자협회 코드: K5F129101773)											
위험등급	2등급(변동성, 20.55%(2018.6.30기준))												

	벤치마크	MSCI China 10/40 Index (Total Return Net)									
	표시통화	USD									
분류	투자신탁 /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재간접형) / 개방형 / 추가형 / 종류형 / 모자형 / 전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 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2% 이내	19350	100	101	19417	317	523	740	1207	2593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보수체감(C1)	없음	24350	150	-	24350	250	501	754	1262	2737
	수수료선취- 온라인(A-E)	납입금액의 06% 이내	14350	050	063	14406	207	361	523	871	1906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없음	19350	100	088	19413	199	408	627	1,100	2503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3년 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내	12850	035	-	12902	132	271	417	731	1,663	
<p>*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 · 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합성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p> <p>*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1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p>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12.13 ~ 21.12.12	19.12.13 ~ 21.12.12	18.12.13 ~ 21.12.12	16.12.13 ~ 21.12.12	07.11.26 ~ 21.12.12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2007.11.26	-9.09	18.33	21.70	16.88	1.99				
	비교지수(%)		-10.66	7.23	7.96	9.62	1.41				
수익률변동성(%)	24.64		26.25	23.68	22.26	26.53					
<p>* 비교지수 : MSCI China 10/40 Index (Total Return Net) 90% + 콜금리 10%</p> <p>*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p> <p>*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당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p>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단위: 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재간접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성걸	1984	책임(매니저)	8	276	-	-	1342	10.14	1년 6개월
<p>*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p> <p>*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p> <p>*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p>									
투자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li> <li>• <b>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b></li> <li>•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li> <li>• <b>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b></li> <li>•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ul>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p>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p>							
	중국시장 위험	<p>중국의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는 이머징마켓 투자의 일반적인 위험을 비롯하여 중국시장의 특정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계획 경제에서 시장중심 경제로 변환하는 시기에 처해 있으며 중국 투자는 정부 개입을 포함한 정치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정책과 함께 법규정의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제한된 투자 수용력 때문에 손실을 입거나 현지 투자 제한, 중국 내 증권시장의 비유동성 및 거래의 집행 및 결제 지연이나 결렬 때문에 투자 목적 또는 전략을 온전하게 실행하거나 추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p>							

<p>시장위험 및 투자신탁위험</p>	<p>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파생상품 투자위험</p>	<p>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p>
<p>환율변동위험</p>	<p>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기준가격은 원화로 표시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하위집합 투자기구에 투자함으로써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외화표시자산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환헤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목표 환헤지비율은 환헤지 가능 순자산의 70% 이상이며 최대 100% 수준). 그러나 국내 외환시장의 환경에 따라 유동성 부족, 거래상대방 부족,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변동, 외환관련 파생시장에 환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헤지거래가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헤지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헤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헤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기준가격 산출에 있어 외국주식과 환헤지 목적으로 투자한 파생상품의 평가반영 시점이 상이한 경우 헤지효과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p> <p>투자대상 자산의 표시통화 대비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경우(환율상승)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이러한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환헤지 계약 만기 후 재계약(roll-over)시 시장환율 및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p> <p><b>▪ 환위험 관리</b></p> <p>1)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기준가격은 원화로 표시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하위집합 투자기구에 투자함으로써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외화표시자산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환헤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p> <p>2) 환헤지 방법 환헤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 간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통화선물,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환율 변동위험에 대해 헤지합니다. 그러나 국내 외환시장의 환경에 따라 유동성 부족, 거래상대방 부족,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변동, 외환관련 파생시장에</p>

	<p>환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헷지거래가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p> <p>3) 목표헤지비용 및 환헤지의 장단점                  환헤지 가능 순자산의 70% 이상(최대100%수준) 환헤지를 목표로 합니다. 환헤지를 통해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반면 투자대상 자산 표시통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환차익을 취하지 못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 만기 후 재계약(roll-over)시 시장환율 및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4) 환헤지비용 등                  헤지비용은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은 불가능 합니다.</p>			
<p>통화위험</p>	<p>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 및 투자자산으로부터 창출되는 이익은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은 투자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헷지 전략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이지만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p>			
<p>재간접 투자위험</p>	<p>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주로 타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타 집합투자기구의 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p> <p>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p> <p>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존 수익자 또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매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 투자신탁은 유사한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을 가진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투자하거나 대체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운용 등의 비용, 세금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보수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성과보수율과 계산방식 등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매입 방법</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284 1960 798 2056"> <p>·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p> </td> <td data-bbox="798 1960 925 2056"> <p>환매 방법</p> </td> <td data-bbox="925 1960 1495 2056"> <p>·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p> </td> </tr> </table>	<p>·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p>	<p>환매 방법</p>	<p>·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p>
<p>·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p>	<p>환매 방법</p>	<p>·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p>		

한화차이나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p>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p>· <b>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b>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p>	<p>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7영업일(D+6)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p> <p>· <b>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b>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p>						
<p><b>환매 수수료</b></p>	<p>없음</p>							
<p><b>기준가</b></p>	<p><b>산정방법</b></p>	<p>-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금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금 총좌수</p> <p>-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p>						
	<p><b>공시장소</b></p>	<p>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p>						
<p><b>과세</b></p>	<p><b>구분</b></p> <p><b>집합투자기금</b></p> <p><b>수익자</b></p>	<p><b>과세의 주요 내용</b></p> <p>집합투자기금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p> <p>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금으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p>						
	<p>· 연금저축계좌의 세제(Class CP, CP-E, S-P 수익자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퇴직연금제도의 세제(Class P 수익자에 한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연금 투자신탁으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자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p> <p>※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 및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금 및 종류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과세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b>전환절차 및 방법</b></p>	<p><b>(다른 투자신탁 수익증권간 전환)</b> 이 집합투자기금은 UA 클래스 또는 UC-E 클래스 수익증권에 관하여 아래의 “한화펀드 엠브렐라 클래스”의 각 집합투자기금간에 각 집합투자기금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금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법 제 232 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형 집합투자기금입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277 1854 1492 2047"> <thead> <tr> <th data-bbox="277 1854 437 1906">유형</th> <th data-bbox="437 1854 1492 1906">전환가능 집합투자기금</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77 1906 437 2002"> <p><b>주식형</b></p> </td> <td data-bbox="437 1906 1492 2002"> <p>한화천연자원증권 자투자신탁(주식)</p> <p>한화한국오피튜니티증권 자투자신탁(주식)</p> </td> </tr> <tr> <td data-bbox="277 2002 437 2047"> <p><b>재간접형</b></p> </td> <td data-bbox="437 2002 1492 2047"> <p>한화러시아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p> </td> </tr> </tbody> </table>		유형	전환가능 집합투자기금	<p><b>주식형</b></p>	<p>한화천연자원증권 자투자신탁(주식)</p> <p>한화한국오피튜니티증권 자투자신탁(주식)</p>	<p><b>재간접형</b></p>	<p>한화러시아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p>
유형	전환가능 집합투자기금							
<p><b>주식형</b></p>	<p>한화천연자원증권 자투자신탁(주식)</p> <p>한화한국오피튜니티증권 자투자신탁(주식)</p>							
<p><b>재간접형</b></p>	<p>한화러시아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p>							

	한화미국대표증권 자투자신탁 1 호(주식-재간접형) 한화브라질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한화유럽대표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한화차이나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한화아미경국공채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한화글로벌전환사채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집합투자업자	한화자산운용(주) (대표번호 : 02-6950-0000 / 인터넷 홈페이지 : <a href="http://www.hanwhafund.com">www.hanwhafund.com</a> )			
모집기간	계속 판매 가능	모집·매출 총액	제한없음	
효력 발생일	2021년 12월 23일	존속 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hanwhafund.com">www.hanwhafund.com</a> ),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dis.kofia.or.kr">dis.kofia.or.kr</a> )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2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b>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2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b>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S)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b>		

	<b>온라인 슈퍼(S)</b>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b>보수체감</b>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 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b>기관, 법인100억 (F)</b>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최초 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일반법인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개인100억, 법인50억 (I)</b>	최초 납입금액 100억 이상 개인 또는 50억 이상 100억 미만 일반법인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계열사 자금</b>	투자신탁의 안정된 운용을 위해 투자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에게 발행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랩 (W)</b>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법 시행령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전신탁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전환가능</b>	한화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의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개인연금 (P)</b>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b>퇴직연금 (RP)</b>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한화차이나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한화차이나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b>	<b>76450</b>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76451
수수료선취-온라인(A-E)	AQ55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7946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295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2952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295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2953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7752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법인100억(C-F)	931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100억, 법인50억(C-I)	AE94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931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계열사자금(C-S)	76452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UA)	1880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전환가능(UC-E)	188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B465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B4659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AQ55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B466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P)	B466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으로 분류됩니다.

나. 운용자산별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재간접형)로 분류됩니다.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이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중도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으로 분류됩니다.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으로 분류됩니다.

마. 특수형태 표시: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집합투자기구(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클래스)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모자형집합투자기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 및 UA 클래스 수익증권과 UC-E 클래스 수익증권에 관하여 전환형집합투자기구 (“한화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의 각 집합투자기구 간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집합투자기구)로 분류됩니다.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사항 없음**

주) 상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내용 중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과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 구조"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모집(매출)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제1부의 내용 중 4. 가. "모집의 내용"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

주) 모집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또는 설립이 취소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의 내용:**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하고자 하는 투자신탁의 종류(클래스) 및 종류별(클래스별) 가입자격은 제 2 부의 내용 중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은 종류별로 모집규모가 정해지지 아니하고 모집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모집의 규모 및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집니다.

**나. 모집방법 및 내용:** 이 투자신탁의 모집(매출)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내용 중 "11.매입, 환매, 전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기간:**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라. 모집장소:** 이 투자신탁은 판매회사 본·지점을 통해 모집합니다.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www.hanwhafund.com](http://www.hanwhafund.com))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인수인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인수의 방법으로 판매되지 않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상장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한화차이나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한화차이나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b>	<b>76450</b>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76451
수수료선취-온라인(A-E)	AQ55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7946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295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2952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295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2953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7752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법인100억(C-F)	931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100억, 법인50억(C-I)	AE94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931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계열사자금(C-S)	76452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UA)	1880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전환가능(UC-E)	188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B465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B4659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AQ55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B466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P)	B4661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사항
2007.11.26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설정
2008.09.16	영업일 정의등 변경
2008.11.25	투자신탁 결산
2009.05.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명칭 등 변경
2009.11.25	투자신탁 결산
2010.01.22	엠브렐러 클래스 신설
2010.05.03	판매보수 인하
2010.11.25	투자신탁 결산
2011.01.17	C클래스를 C1클래스로 명칭 변경

	C2클래스, C3클래스, C4클래스, C5클래스 신설 C-E클래스 판매보수 인하
2011.04.15	참고지수 변경
2011.11.25	투자신탁 결산
2012.11.25	투자신탁 결산
2012.12.27	C-I 클래스 신설
2013.11.25	투자신탁 결산
2014.04.01	A-E클래스, S클래스 신설
2014.11.25	투자신탁 결산
2015.07.03	CP, CP-E, S-P 및 P 클래스 신설
2015.11.25	투자신탁 결산
2016.01.15	환매수수료 삭제
2016.02.25	세법개정에 따른 정정 (이익분배금 유보 등)
2016.07.02	투자위험등급 체계 개편에 따른 위험등급 변경
2016.11.25	투자신탁 결산
2018.06.04	-집합투자업자 변경(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 =>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투자신탁 명칭 변경,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2018.08.31	비교지수 변경(MSCI China Index(HKD) 95% + MMI Call 5% => MSCI China Index(Local) 90% + MMI Call 10%) 운용전문인력변경(양우석 => 신동혁)
2019.06.27	- 모투자신탁 위탁운용 해지 - 펀드 유형(주식형 => 주식-재간접형) 변경에 따른 펀드명칭, 투자대상, 전략, 위험 정정 - 펀드명칭: 한화차이나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한화차이나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비교지수: MSCI China Index(Local) 90% + 콜금리 10% => MSCI China 10/40 Index (Total Return Net) 90% + 콜금리 10% - 책임운용전문인력: 신동혁 => 고정희 - 매입방법: 17시 이전 제2영업일 기준가, 17시 경과후 제3영업일 기준가 => 17시 이전 제3영업일 기준가, 17시 경과후 제4영업일 기준가 - 환매방법: 17시 이전 제3영업일 기준가 적용 제7영업일 지급, 17시 경과후 제4영업일 기준가 적용 제8영업일 지급 => 17시 이전 제4영업일 기준가 적용 제7영업일 지급, 17시 경과후 제5영업일 기준가 적용 제8영업일 지급
2019.09.25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2019.08.01) 반영
2020.01.16	전자증권제도 시행 반영
2020.02.14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모투자신탁 포함)(고정희 → 김종욱)
2020.09.24	전환가능 대상펀드(한화중동&아프리카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삭제
2021.10.13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모투자신탁 포함) (김종욱 → 박성걸)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입니다. 다만, 법령 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5 부의 내용 중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상기의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집합투자업자**

**가.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63 (대표전화 : 02-6950-00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현황**

(기준일: 2021년 12월 12일)

구분	성명	생년	운용현황 (단위: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재간접형)%				주요 경력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책임 운용 전문 인력	박성걸	1984	8	276	-	-	1342	1014	-운용경력년수:1년6개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미래에셋대우(2011.07~2015.02) -미래에셋자산운용(2015.02~2015.07) -키움투자자산운용(2015.07~2016.11) -로버스트자산운용(2016.11~2018.07) -한화자산운용(2018.07~현재)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당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 5)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2019.06.27	신동혁	고정희
2020.02.14	고정희	김종육
2021.10.13	김종육	박성걸

**<모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

(기준일: 2021년 12월 12일)

구분	성명	생년	운용현황 (단위: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재간접형)%				주요 경력 및 이력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책임 운용 전문 인력	박성걸	1984	8	276	-	-	1342	1014	-운용경력년수:1년6개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미래에셋대우(201107~201502) -미래에셋자산운용(201502~201507) -키움투자자산운용(201507~201611) -로버스트자산운용(201611~201807) -한화자산운용(201807~현재)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당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 5)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해당사항 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투자신탁,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전환형(UA 및 UC-E클래스에 한함), 모자형

나. 종류형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2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b>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7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b>2년 7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b>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S)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b>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b>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b>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b>
기타	보수체감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 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기관, 법인100억 (F)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최초 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일반법인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100억, 법인50억 (I)	최초 납입금액 100억 이상 개인 또는 50억 이상 100억 미만 일반법인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계열사 자금	투자신탁의 안정된 운용을 위해 투자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에게 발행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법 시행령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전신탁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전환가능	한화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의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 전환형(UA 및 UC-E클래스에 한함. 전환대상 펀드)**

- ① 한화글로벌전환사채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② 한화러시아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③ 한화미국대표증권 자투자신탁 1 호(주식-재간접형)
- ④ 한화브라질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⑤ 한화유럽대표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 ⑥ 한화이머징국공채증권 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 ⑦ 한화차이나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⑧ 한화천연자원증권 자투자신탁(주식)
- ⑨ 한화한국오퍼튜니티증권 자투자신탁(주식)

**라. 모자형**

모투자신탁	한화 차이나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자투자신탁	한화차이나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100% 이하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법인 또는 중국의 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장기적 자본증식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및 투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대상	취득한도	투자대상자산 세부설명
①모투자신탁 수익증권	- 100%이하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은 한화차이나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의 수익증권을 말함
②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예의 예치	- 10%이하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단기대출 : 법시행령제 83 조제 4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 금융기관 예치 : 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상기의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에 해당하는 외화표시 자산
기 타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예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주)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한도 및 투자제한의 예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u>가.투자대상</u> 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의 가.투자대상의 ①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및 투자제한>

- 투자대상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대상 세부설명
① 집합투자증권	70%이상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을 포함한다)
② 채권	30%이하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③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해외장내파생상품을 포함한다)
④ 장외파생상품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통화나 주식·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해외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한다)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시행령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li> <li>-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기대출(법시행령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이내의 금전의 대여)</li> <li>2.금융기관 예치(만기 1 년이내인 상품에 한함)</li> <li>3. 환매조건부 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li> <li>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li> </ol> </li> <li>-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 하락일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li> <li>- 상기에서 정한 처분기간 또는 연장된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이상으로 상승한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처분의무는 소멸합니다.</li> </ul>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투자대상의 ①,②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1개월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 투자대상의 ①,②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신탁업자에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내 용	예외
①이해관계 인과의 거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동일종목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최초

<p>증권</p>	<p>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p>	<p>설정일부터 1개월</p>
	<p>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제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p>	
<p>③집합투자 증권</p>	<p>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p>	<p>최초</p>

	<p>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 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p> <p>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설정일부터 1개월</p>
④파생상품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p>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p>
⑤파생상품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⑥장외파생상품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⑦장외파생상품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⑧계열회사 발행 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 투자제한의 ②,③,④,⑤,⑥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p>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p> <p>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p>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상기 투자제한의 ③의 가 및 나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으로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 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가.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의한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증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 나.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 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의 100%이하를 모투자신탁인 한화차이나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에 투자합니다.

**(2)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한화차이나증권 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은 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법인 또는 중국의 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증식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록셈부르그에 등록된 제이피모간펀드(JPMorgan Funds)에 속한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JPMF-차이나 펀드(X(acc)) (이하 본 하위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JPMF-차이나 펀드(X(acc))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투자기구 명칭	JPMF-차이나 펀드(X(acc))
집합투자업자 명칭	JF Asset Management Limited
설립일	1994년 7월 4일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9년 1월 14일)
투자대상	자산의 최소 67%를 중국에 소재하거나 또는 중국에서 주요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주식에 투자. 중국-홍콩 주식 교차매매 프로그램, RQFII 및 RFII 쿼터를 통하여 중국 A-주식에 투자할 수 있음. 중소형주 증권들에 투자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한정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음
ISIN	LU0143809738(금융투자협회 코드: K5F129101773)
위험등급	2등급(변동성, 20.55%(2018.6.30기준))
벤치마크	MSCI China 10/40 Index (Total Return Net)
표시통화	USD
펀드매니저	<p><b>Howard Wang</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화권(Greater China) 주식에 관한 전문가로서 이머징마켓/ 아시아태평양 주식팀 내 중화권 주식팀 팀장</li> <li>- 홍콩을 기반으로, 홍콩 및 대만의 중화권 포트폴리오 운용팀을 이끌고 있으며, J.P.모간 자산운용의 조인트벤처인 China International Fund Management의 선임자문역을 맡고 있음</li> <li>- Yale University 경제학과 졸업</li> </ul> <p><b>Rebecca Jiang</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화권 주식 전문가이며, 홍콩 소재 이머징마켓/아시아태평양 주식팀 내 중화권 주식팀</li> <li>- Fudan University 학사 및 석사 취득</li> <li>- CFA charter</li> </ul>

※ 이 투자신탁은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JPMF-차이나 펀드의 X 클래스를 매수합니다. X 클래스의 선취 및 후취 판매수수료, 판매보수는 없으며, 운용보수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JPMF-차이나 펀드 가 청산 및 해산 되거나, 정상적으로 운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유사한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을 가진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한 수익자에게 통보 등 수시공시의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 환헤지 전략 및 환위험 관리**

1) 환헤지 여부

-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원화로 표시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하위집합 투자기구에

투자함으로써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환헤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2) 환헤지 방법 및 목표 헤지비율

-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기준가격은 원화로 표시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하위집합 투자기구에 투자함으로써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외화표시자산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환헤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헤지 비율은 전체 외화자산 중 환헤지 가능한 순자산의 70% 이상(최대 100% 수준)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화자산의 환위험에 대한 100% 헤지는 불가능하며, 투자신탁의 설정 및 헤지, 환율변동, 주가변동, 포트폴리오 변경 및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목표 헤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초통화 투자자산이 펀드 내 보유비중이 작은 경우 및 국내 외환시장의 환경에 따라 유동성 부족, 거래상대방 부족,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변동, 외환 관련 파생시장에 혼란, 과도한 헤지 비용 등의 사유로 헤지거래를 전액 또는 일부 실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환헤지의 장단점

- 외국통화로 표시된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헤지를 실시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환헤지로 인하여 환차익(환율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4) 환헤지비용 등

-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며, 환헤지 계약 만기 후 재계약(roll-over)시 시장환율 및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헤지비용은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은 불가능합니다.

**(4)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비교지수 산출기관의 사정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 MSCI China 10/40 Index (Total Return Net) 90% + 콜금리 10%

주1)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의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헷지 계약의 만기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헷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투자대상국가와 한국간의 영업일, 시차 등으로 인하여 비교시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본 문서의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 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등록(또는 정정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는 2019년 6월 27일자로 MSCI China Index(Local) 90% + 콜금리 10%에서 MSCI China 10/40 Index (Total Return Net) 90% + 콜금리 10%로 변경되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의 종류(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입하게 되면, 자투자신탁을 통하여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손익은 이 투자신탁을 통하여 종류(클래스) 수익증권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하여 본 문서의 작성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투자위험은 모투자신탁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반위험, 모투자신탁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특수위험,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기타 투자위험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투자이사 결정시 참고하여야 할 모든 위험이나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은 아니며, 향후 투자환경의 변화 등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는 것임을 투자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집합투자기구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p>시장위험 및 투자신탁위험</p>	<p>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 채무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파생상품 투자위험</p>	<p>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은 장외파생상품을 발행한 회사와의 직접적인 거래이므로 그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의 원리금을 제때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p>
<p>환율변동위험</p>	<p>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기준가격은 원화로 표시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하위집합 투자기구에 투자함으로써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외화표시자산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환헤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목표 환헤지비율은 환헤지 가능 순자산의 70% 이상이며 최대 100% 수준). 그러나 국내 외환시장의 환경에 따라 유동성 부족, 거래상대방 부족,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변동, 외환관련 파생시장에 환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헤지거래가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헤지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헤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기준가격 산출에 있어 외국주식과 환헤지 목적으로 투자한 파생상품의 평가반영 시점이 상이한 경우 헤지효과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 자산의 표시통화 대비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경우(환율상승)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이러한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환헤지 계약 만기 후 재계약(roll-over)시 시장환율 및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p>
<p>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p>	<p>채무증권의 가격은 현행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시장상황에 미루어 볼 때, 저금리 시대에는 이자율 상승에 따른 위험은 높았습니다.</p>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p>국가위험</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해외(신흥시장 포함)의 자산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p>

	<p>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와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p>
<p>중국시장 위험</p>	<p>중국의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는 이머징마켓 투자의 일반적인 위험을 비롯하여 중국시장의 특정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계획 경제에서 시장중심 경제로 변환하는 시기에 처해 있으며 중국 투자는 정부 개입을 포함한 정치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정책과 함께 법규정의 변동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제한된 투자 수용력 때문에 손실을 입거나 현지 투자 제한, 중국 내 증권시장의 비유동성 및 거래의 집행 및 결제 지연이나 결렬 때문에 투자 목적 또는 전략을 온전하게 실행하거나 추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p>
<p>차이나커넥트 관련 위험</p>	<p>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증권은 차이나 커넥트를 통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 위험 이외에 아래의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합니다.</p> <p><u>할당량 제한</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이나 커넥트는 할당량의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후구통 및 선구통 일일 할당량의 잔존량이 0이 되거나 후구통 및 선구통 일일 할당량이 개장 직후에 초과되는 경우, (투자자들은 할당량 잔존량과 무관하게 역외증권은 계속하여 매도할 수 있으나) 신규 매수 주문은 거절될 것입니다. 따라서 할당량 한도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은 원하는 시점에 차이나 커넥트를 통하여 중국 A 주식에 투자하지 못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은 그 투자전략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li> </ul> <p><u>중단 위험</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HK, SSE와 SZSE는 모두 공정 시장 질서 보장 및 위험 관리를 위하여 후구통, 선구통 및/또는 강구통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제기관이 거래를 중단시키기 전에 그 규제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차이나 커넥트를 통한 후구통 및 선구통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중국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원하는 시점에 환매 요청에 따라 후구통 및 선구통을 통하여 A 주식을 매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은 그 투자목적 달성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li> </ul> <p><u>운용 위험</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이나 커넥트는 관련 시장 참가자들의 운용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함을 그 전제로 합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해당 거래소 및/또는 청산기구(clearing house)가 제시하는 정보기술 능력, 위험관리 능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li> <li>● 두 시장의 증권 제도 및 법적 시스템은 매우 다르고, 시험 단계에 있는</li> </ul>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장 참가자들은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나아가 차이나 커넥트 프로그램에서의 “연결성(connectivity)”으로 인하여 역외주문이 요구되므로, SEHK와 거래소 참가자들의 편에서 새로운 정보기술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즉, 거래 참가자들이 접속하여야 하는 시스템으로서 SEHK가 개발한 새로운 주문 시스템(“중국 주식 연결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SEHK의 시스템과 시장 참가자들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거나 홍콩 및 상해/선전 양 시장에서의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적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해당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 프로그램을 통한 홍콩 및 상해/선전 양 시장에서의 거래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중국 A 주식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로 인하여 그 투자 전략을 실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전감독(front-end monitoring)에 따른 매도 제한

- 중국 규정에 따라 투자자는 주식을 매도하기 전에 계정에 충분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SSE 또는 SZSE는 매도 주문을 거절할 것입니다. SEHK는 그 참가자들의 중국 A 주식 매도 주문에 대하여 거래 전에 검토하여 초과 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 이 투자신탁이 계좌에 충분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중개인이 확인하여 지지 않는 이상 이 투자신탁이 자신이 보유한 특정 중국 A 주식을 매도하기 위하여는 매도일(“거래일”) 개장 전까지 그 중개인의 계좌로 해당 중국 A 주식을 이전하여야 합니다. 위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거래일에 주식을 매도할 수 없습니다. 위 요건으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은 원하는 시점에 중국 A 주식을 처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투자신탁이 CCASS에 참여하는 보관회사 참여자 또는 일반 결제 참여자인 보관회사에 중국 A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강화된 거래전검토모델(pre-trade checking model)에 따라 중국 A 주식을 보유하기 위하여 보관회사로 하여금 CCASS에 특별분리계좌(special segregated account, 이하 “SPSA”)를 개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CCASS는 각 SPSA에 대하여 고유한 “투자자 ID”를 부여할 것인데, 이는 차이나 커넥트 시스템이 이 투자신탁과 같은 투자자의 보유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중개인이 이 투자신탁의 매도주문을 입력하는 시점에 SPSA 보유량이 충분한 경우, 이 투자신탁은 (매도주문 전까지가 아니라) 체결 후에 중국 A 주식을 자신의 SPSA로부터 중개인의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은 중국 A 주식을 중개인에게 이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보유한 중국 A 주식을 원하는 시점에 처분하지 못하는 위험은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격주식 범위에서의 제외

- 어떠한 주식이 차이나 커넥트를 통한 거래 적격주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주식은 매도될 수 있을 뿐이고 매수는 제한됩니다. 이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적격주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게 되어 그 투자 포트폴리오나 투자 전략을 변경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청산 및 결제 위험

- HKSCC 및 중국예탁결제원(ChinaClear)은 청산연결망(clearing link)들을 개설하였고, 각각은 상대방에 대한 참가자가 됨으로써 역외거래의 청산 및 결제를 용이하게 하려 합니다. 시장에서 역외거래가 개시되는 경우 그 시장의 청산기구(clearing house)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청산 참가자들을 청산 및 결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 청산기구(clearing link)에의 청산 참가자들의 청산 및 결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국예탁결제원(ChinaClear)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하고 중국예탁결제원(ChinaClear)이 채무불이행으로 선언되는 경우, HKSCC는 자신과 시장계약(market contracts)을 체결한 청산 참가자들이 중국예탁결제원(ChinaClear)에 대하여 청구를 함에 있어 이를 보조함으로써 위 시장계약에 따라 후구통 및 선구통 거래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HKSCC는 법적 수단 또는 중국예탁결제원(ChinaClear)에 의한 유동화를 통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미 발행한 주식 및 자금을 중국예탁결제원(ChinaClear)으로부터 회수하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수 과정은 지연될 수 있고, 이 투자신탁은 중국예탁결제원(ChinaClear)으로부터 그 손실을 완전히 배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 주요행위(corporate action) 및 주주총회에 대한 참여

- HKSCC는 CCASS 참여자들에 대하여 SSE 및 SZSE 증권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 주요행위(corporate action)에 관하여 통지하여 줄 것입니다. 홍콩 및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신탁 포함)은 그들의 개별적인 중개인 또는 보관회사(즉, CCASS 참가자들이 특정한 약정 및 기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들은 1 영업일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중국 A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 주요행위(corporate action)와 관련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원하는 시점에 회사 주요행위(corporate action)에 참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홍콩 및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신탁 포함)은 그들의 중개인 및 보관회사를 통하여 차이나 커넥트에서 거래되는 중국 A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토 관행에 따라 복수의 대리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중국 A 주식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보상기금으로부터의 보호의 부재

- 차이나 커넥트를 통한 투자는 중개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그와 같은 중개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차이나 커넥트 하에서 후구통 및 선구통을 통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는

	<p>홍콩투자자보상기금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국 A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는 중개인들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수반됩니다.</p> <p><u>규제 위험</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이나 커넥트는 규제당국이 제정한 규정 및 중국과 홍콩 증권거래소의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규제들이 차이나 커넥트에서의 역외거래 운용 및 실행과 관련하여 제정될 수 있습니다.</li> <li>● 규정들은 검증되지 않았고, 이와 같은 규정들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적용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현행 규정들은 변경될 수 있고, 변경된 내용은 소급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나 커넥트가 폐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보장도 없습니다. 차이나 커넥트를 통하여 중국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이 투자신탁은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ul>
<p>신흥시장 위험</p>	<p>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재산을 투자하는 몇몇 신흥 시장의 회계, 감사, 재무 보고 관련 기준은 국제 기준에 비하여 덜 엄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몇몇 기업들은 특정한 주요 공지사항을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흥 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와 위험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상당수의 신흥 시장 국가들은 근대적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거나 예상치 못한 급격한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와 관련하여 매우 높은 수위의 직접적인 규제를 고수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갑작스럽고 광범위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를 감행할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의 경제와 투자신탁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흥시장의 국유화·몰수·세금징수·외국환 규제·정치적 변화, 정부 규제·사회적 불안정·외교 상황과 제한적 유동성, 가격 변동성, 외국인 투자 및 자본에 대한 규제와 같은 작은 자본 시장 투자의 위험, 그리고 높은 물가 인상과 금리, 정치·사회의 불확실성을 포함한 신흥 경제와 관련된 위험 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흥시장과 관련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포트폴리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현함에 있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분산 위험</p>	<p>모투자신탁은 고도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보유종목의 측면에서 다양화되어 있더라도, 수익자들은 모투자신탁이 그 투자대상국가의 상황악화로 인한 가격변동에 더 많이 노출되어, 광범위한 투자신탁, 예컨대, 글로벌주식형 투자신탁보다 모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의 변동이 심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p>
<p>변동성위험</p>	<p>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자산의 가치는 경제, 정치, 시장 및 발행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종류의 산업, 금융시장 및 증권은 이러한 변화에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모투자신탁의 가치는 변동성을 가질 수 있고, 단기간 동안에는 변동성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p>
<p>법률, 세금 및</p>	<p>모투자신탁이 운용되는 기간 중 법률, 세금 및 규정 등의 제도적인 변화에 따라</p>

<p>규정등 제도적 위험</p>	<p>운용중인 투자신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규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규정이 제정되는 경우, 이 투자신탁, 모투자신탁 및 수익자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이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이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게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p> <p>국내 거주자인 투자자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 이하 같음)은 해당투자자의 과세이익 계산에서 제외되나,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헛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 등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이익이 없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인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헛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환헛지 대상 해외자산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환헛지 거래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 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 중 “14. 나. (6)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수익자에 대한 과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p>
<p>미국 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신고 제도(FATCA)</p>	<p>미국 고용회복 촉진을 위한 법률(US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HIRE")에 포함되어 제정된 FATCA에 의하면, 모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FATCA를 따르지 않는 경우 2014년 6월 30일 이후부터는 특정한 미국 원천소득(모투자신탁과 관련하여서 주로 미국정부를 포함한 미국 법인·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 및 이자)에 대하여, 2016년 12월 31일 이후부터는 미국 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 매각수익 총액(모투자신탁과 관련하여서 주로 미국정부를 포함한 미국 법인·기관이 발행한 지분·채무증권)에 대하여 30%의 세율로 미국 원천징수가 부과됩니다. 미국 재무규정(US Treasury Regulations) 하에서는 FATCA는 미국세청(IRS)과 외국금융기관(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FFI)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적용되고, 이에 따라 모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투자신탁의 특정 투자자(FATCA에 따라 제정된 미국 재무규정상의 특정 미국인 또는 특정 미국인이 소유하는 비미국 법인 등을 의미합니다.)의 지분율 및 그에게 지급되는 금액과 관련된 미국 세금보고에 동의하게 됩니다. 모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은 대한민국에 위치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Model 1 정부간 협약(이하 "한국 IGA")의 적용을 받는데, 이에 따르면 모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은 대한민국 현지의 지도에 따라 시행되는 FATCA를 준수할 것이 요구되고, FATCA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에 보고할 것이 요구됩니다. 한국 IGA는 미국 재무규정상 FATCA 요구사항을 수정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미국세청에 전달되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유사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모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은 FATCA를 준수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2017년까지는 모투자신탁의 경우 미국 원천 수입에 대한 30% 원천징수세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p>

	<p>투자신탁 또한 투자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지급에 관하여 FATCA 원천징수를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p> <p>모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은 현재 FATCA를 준수하고자 하나, FATCA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이 복잡하기 때문에 FATCA의 준수가 보장되지는 아니합니다. 만일 모투자신탁 또는 이 투자신탁이 FATCA에 따른 원천징수의 부담을 면하기 위해 충족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모투자신탁에 지급되는 미국원천지급금에 대하여 FATCA에 따른 30%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즉,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FATCA에 따라 원천징수된 금액은 미 국세청으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p> <p>본 내용은 세금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할 목적으로 의도되거나 작성되지 않았으며, 누구도 미국연방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추정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 내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자신의 FATCA 지위와 FATCA 도입의 효과와 관련하여 특정한 상황에 대하여 조세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p>
<p>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위험</p>	<p>금융시장은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변동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p>
<p>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p>	<p>모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특히 모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이나 만기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되고 높은 가격 변동 위험에 노출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p>
<p>재간접 투자위험</p>	<p>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주로 타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타 집합투자기구의 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p> <p>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p> <p>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존 수익자 또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매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 투자신탁은 유사한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을 가진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투자하거나 대체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게</p>

	<p>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운용 등의 비용, 세금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보수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성과보수율과 계산방식 등은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의 교체 위험</p>	<p>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인 JPMF-차이나 펀드가 청산 또는 해산 되거나, 운용전략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된다고 판단될 경우, 유사한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을 가진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p>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p>이 투자신탁의 하위 집합투자기구가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자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선물, 스왑 및 비상장 옵션 등과 같은 장외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품들은 때때로 유동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즉시 현금화하기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즉시 자산의 현금화가 요구되는 경우 일부 자산은 단기간에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투자자의 환매요구는 신탁계약에 따라서 처리될 것입니다.</p>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p>매입/환매청구일과 매입/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매입/환매청구일로부터 매입/환매일까지의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p>
펀드규모 위험	<p>집합투자기구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모투자신탁 자산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원활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p>
오퍼레이션 위험	<p>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간의 차이, 투자대상국가의 휴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 위험 및 외환거래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p>
환매연기위험	<p>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문서 제2부의 내용 중 "11. 나.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해지 위험	<p>모투자신탁 및/또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모투자신탁 및/또는 이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모투자신탁 및/또는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p>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 또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연환산 표준편차: 23.49%)을 기준으로 투자위험 **6등급 중 2등급에 해당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그에 따른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상기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추후 이 투자신탁의 결산시마다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화자산운용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25% 초과
2등급	높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 고위험자산 <sup>1)</sup> 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25% 이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15% 이하
4등급	보통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 <sup>2)</sup> 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10% 이하
5등급	낮은	투자대상자산의	- 저위험자산 <sup>3)</sup> 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위험	종류 및 위험도 등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5% 이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실제 수익률 변동성	- 0.5% 이하

-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 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 등급 이상), CP(A2- 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 5) 모자구조의 자펀드인 경우 모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자산의 편입비율 및 자펀드의 모펀드 편입비율을 감안하여 등급을 부여함
- 6)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재간접형(Fund of Funds)의 경우 주로 편입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속성을 기초로 위험등급을 부여함
- 7) 펀드별 위험등급은 투자지역, 투자전략, 투자구조, 담보, 신용보강, 레버리지수준, 환위험 노출도, 신용위험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조정할 수 있음
- 8)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등급은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이 위험등급분류는 한화자산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 가. 매입

####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본·지점을 통해 직접 수익증권의 매입을 청구하거나, 판매회사가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수익증권의 매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www.hanwhafund.com](http://www.hanwhafund.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종류 및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종류 및 종류별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의 정책에 따라 투자자가 매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종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종류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선취-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

오프라인(A)	
수수료선취-온라인(A-E)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며,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고, 후취판매수수료는 징구하며,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제 2 부. 11. 다. 수익증권의 전환에 따라 C2 클래스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제 2 부. 11. 다. 수익증권의 전환에 따라 C3 클래스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제 2 부. 11. 다. 수익증권의 전환에 따라 C4 클래스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제 2 부. 11. 다. 수익증권의 전환에 따라 C5 클래스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법인 100억(C-F)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단, 법 제9조 제5항 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는 제외), 최초 납입금액 100억원 이상 일반법인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100억, 법인50억(C-I)	최초 납입금액 100억 이상 개인 또는 50억 이상 100억 미만 일반법인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를 보유한 자 또는 특정금전신탁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으며,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계열사자금(C-S)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투자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UA)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고, 선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며, “한화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의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전환가능(UC-E)	투자자의 자격에 제한이 없고,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으며,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며, “한화 펀드 엠브렐러 클래스”의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에 한하여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판매회사의 인터넷 판매시스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투자자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에게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에 한하여 발행되며,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종류형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투자자가 17 시(오후 5 시) 이전에 자금을 판매회사에 납입한 경우: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납입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 투자자가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에 자금을 판매회사에 납입한 경우: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납입일로부터 제 4 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D	D+1	D+2	D+3
자금납입일 (오후 5 시 이전)		기준가 적용일	
자금납입일 (오후 5 시 이후)			기준가 적용일

- 기준가격의 산정을 위해 외화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산정일의 평가시점(한국 시간으로 17 시 30 분(오후 5 시 30 분) 단 변동 가능함) (이하 "평가시점")에 있어서의 최종시가(또는 "제 2 부. 12.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일의 공정가액)를 사용해 해당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 및/또는 모투자신탁은 시차가 있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평가시점 이전에 해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자금세탁방지과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판매회사로부터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5) 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은 미국 증권법(추후 개정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이하, “법”) 및 이와 유사한 미국 내의 어떠한 법에 의하여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인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거나 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본 항목에 있어 ‘미국인’은 법,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ies Futures Trading Commission)의 특정스왑 규제준수에 관한 지침(Interpretive Guidance and Policy Statement Regarding Compliance with Certain Swap Regulations, 추후 개정되는 사항을 포함합니다), 미국 내국세입법(US 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또는 미국 연방세법(US federal income tax law)에 따라 정의된 자(아래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를 의미합니다) 또는 특정한 미국인이 소유하는 비미국(non-US) 법인(아래 5호의 자를 의미합니다)을 의미합니다.

1.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연방세법상 거주외국인인 개인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외국인’은 (i) 미국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이 발급한 영주권(Alien Registration Card)을 소지하거나, (ii)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을 충족한 자를 의미합니다. 실질체류(Substantial Presence) 기준은 (i) 해당 연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ii) 해당 연도를 포함해 3년 동안 183일(단, 직전 연도 체류일은 1/3을, 전전 연도 체류일수는 1/6을 인정하여 합산) 이상 체류한 경우에 충족하게 됩니다.
2. 미국 또는 미국의 제 주 또는 하위 행정구역(컬럼비아 특별구 포함)의 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조직되는 법인, 조세목적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단체, 파트너십 등을 의미합니다. 단, 미국 재무규정(Treasury Regulations)상 미국인으로 취급되지 않는 파트너십은 제외합니다.
3. 소득 출처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미국 연방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을 의미합니다.
4. 미국법원이 일차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1인 이상의 미국인이 중요결정권을 행사하는 신탁 또는 1996. 8. 20.에 존재하였으며 1996. 8. 19.에 내국신탁으로 취급되었던 선택신탁을 의미합니다.
5. 미국인(위 제 1 호에서 기재된 자를 의미합니다)인 지배자(Controlling Persons, IRC Section 1471 내지 1474 에 따른 미국 해외계좌신고제도(FATCA)와 관련하여 미국정부와 기타 국가의 정부간 체결되는 국가간 협정(Intergovernmental Agreement, 이하 “IGA”)상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가 1 인 이상 존재하는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Passive Non-Financial Foreign Entity)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동적 비금융외국법인’이란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나 적극적 비금융외국법인(IGA 상의 의미에 따른 것을 의미합니다)이 아닌 비미국(non-US) 비금융법인을 의미합니다.

**단, 연금클래스(CP 클래스, CP-E 클래스, S-P 클래스, P 클래스)의 투자자는 미국인 투자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의 본·지점을 통해 관련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거나, 판매회사가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가 제한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대금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 및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수익자가 17시(오후 5시) 이전에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D+6)에 관련 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수익자가 17시(오후 5시) 경과 후에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D+7)에 관련 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D	D+1	D+2	D+3	D+4	D+5	D+6	D+7
환매청구일 (오후5시 이전)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환매청구일 (오후5시 이후)				기준가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주)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수익자의 수익증권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기준일의 5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6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과 신탁계약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sup>주)</sup>로 인하여 환매금액의 지급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합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 이후, 환매연기 기간 동안 수령한 수익증권의 매수 및 환매신청은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날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기간 동안에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주)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환매연기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부터 ③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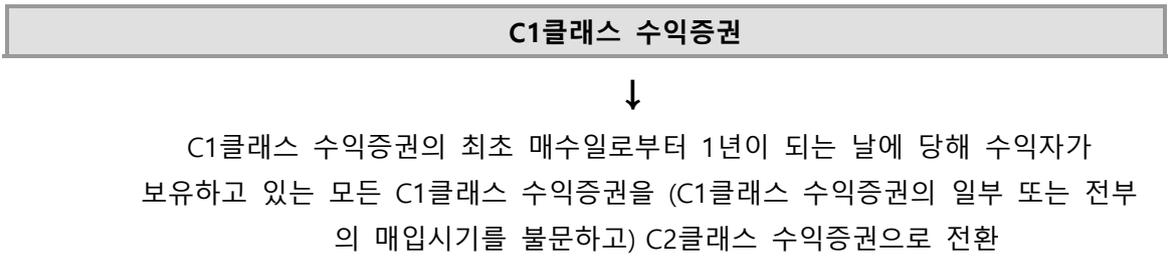
**(8) 환매연기 등으로 인한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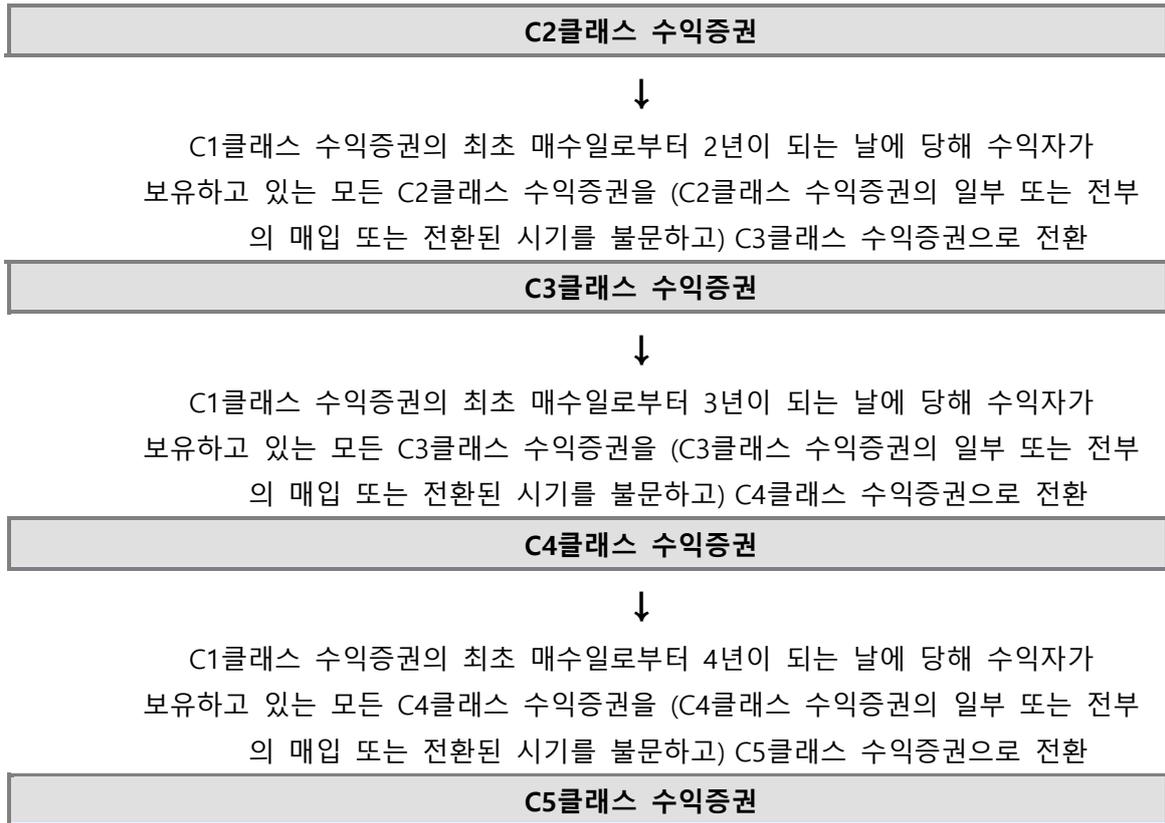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나머지 자산으로부터 분리하고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1) 수익증권의 전환 절차**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C1 클래스 수익증권, C2 클래스 수익증권, C3 클래스 수익증권 및 C4 클래스 수익증권의 잔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익증권의 전환(이하"제 2 부. 11. 다. 수익증권의 전환"내에서 같음)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전환을 청구합니다. 이 때,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수익자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





**(2) 수익증권의 전환 처리 방법**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전환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2 부.11.다.(1) 수익증권의 전환 절차”에 따라 수익증권을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전환하는 날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며(만약 “제 2 부.11.다.(1) 수익증권의 전환 절차”에 언급된 1년, 2년, 3년, 4년이 되는 날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을 전환일로 봅니다.),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전환하는 날의 17시까지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 수익증권의 전환요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판매회사는 “제 2 부.11.다.(1) 수익증권의 전환 절차”를 적용함에 있어 그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라. 투자신탁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UA 클래스 또는 UC-E 클래스 수익증권에 관하여 아래의 “한화펀드 엠브렐러 클래스”의 각 집합투자기구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법 제 232 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① 한화글로벌전환사채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② 한화러시아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③ 한호미국대표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재간접형)
- ④ 한화브라질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 ⑤ 한화유럽대표증권 자투자신탁(UH)(주식-재간접형)



클래스”의 다른 투자신탁의 UC-E클래스의 수익증권으로만 전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판매회사가 “한화펀드 엠브렐러 클래스”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모든 클래스를 판매하지 않거나 “한화펀드 엠브렐러 클래스”의 모든 전환대상 투자신탁을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자의 “한화펀드 엠브렐러 클래스”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다른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의 UA클래스나 UC-E클래스 수익증권에 투자하기 이전에 판매회사에 전환을 원하는 “한화펀드 엠브렐러 클래스” 전환대상 투자신탁의 UA클래스나 UC-E클래스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화펀드 엠브렐러 클래스”의 다른 투자신탁에서 이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선취판매수수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청구 시 전환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청구당일 17 시 [오후 5 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 전환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전환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수익자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UA 클래스 또는 UC-E 클래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 할 수 있으나 판매회사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2부. 11. 라. (2) 전환절차 및 방법”에도 불구하고 한화한국오퍼튜니티증권 자투자신탁(주식)에서 “한화펀드 엠브렐러 클래스”의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처리시 적용되는 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영업일로 합니다. 다만, 전환청구일이 판매회사의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본 문서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제2부. 11. 나.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내지 “제2부. 11. 나. (8) 수익증권의 일부환매”에 따라 전환을 연기하거나 전환신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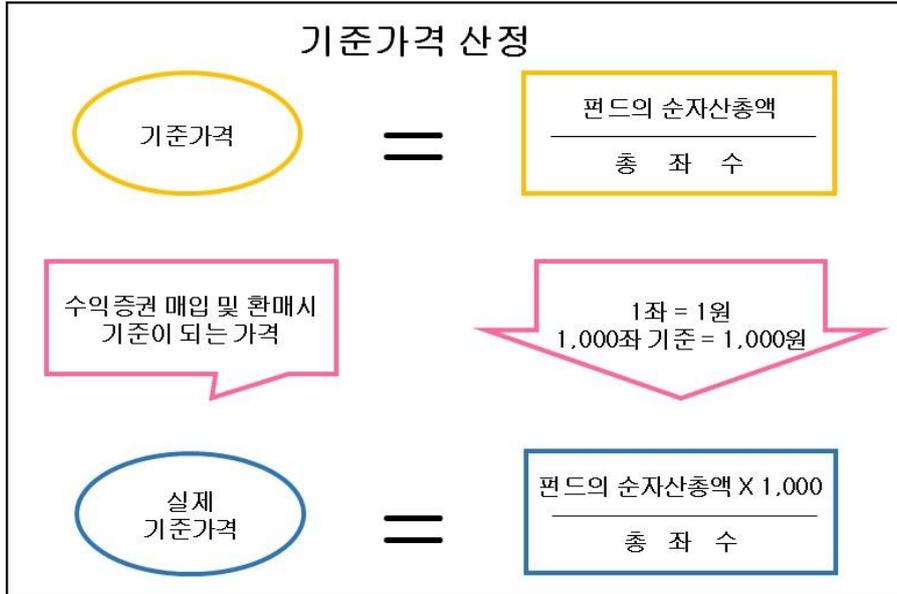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매일
기준가격 공시시기	매일
기준가격 공시방법	전자공시
기준가격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판매회사 홈페이지, 판매회사 각 영업점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각 종류 수익증권별로 판매보수가 상이하므로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모투자신탁 기준가격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산정되며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과 함께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주) 이 투자신탁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은 관계법령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 가격)
③상장채무증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 등을 기초로 한 가격

④해외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⑤집합투자증권	<p>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 다만, 한국거래소에 상장되고 국내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국내주식 관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은 다음에 따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증가과리율<sup>주1)</sup>이 ±2% 범위 이내일 경우 : 한국거래소 최종시가</li> <li>2. 증가과리율이 ±2% 범위 초과일 경우 :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종 NAV(순자산가치)</li> </ol>
⑥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전날의 최종시가
⑦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 (비상장주식,비상장채무증권)	<p>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취득가격</li> <li>2.거래가격</li> <li>3.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감정평가업자,투자매매업자 등이 제공한 가격</li> </ol>
⑧장외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p>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품의 리턴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으로서 시초매매가 상품의 만기시까지 유지되는 상품 : 발행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2곳이 제공하는 평균 가격 중 낮은 가격</li> <li>-상품의 리턴이 기초자산의 가격변화에 연동되는 파생상품으로서, 상품의 만기전에 비정기적으로 매매가 예상되는 상품 :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단순산술평균</li> </ul>
⑨외화표시자산의 평가시 한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에 외국환중개회사에서 제공하는 최근 거래일의 환율정보를 이용한 환율

주1) 증가과리율 :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한국거래소 최종시가/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기준일에 공시된 최종 NAV(순자산가치)-1] × 100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1) 구성: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리스크관리팀장 등
- 2) 업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사전자산배분기준에 관한 사항
  - 기타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및 이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은 수익증권의 종류(클래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클래스)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20% 이내 <sup>주1)</sup>	-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60% 이내 <sup>주1)</sup>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sup>주2)</su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법인100억(C-F)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100억, 법인50억(C-I)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계열사자금(C-S)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UA)	납입금액의 1.00% 이내 <sup>주1)</sup>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전환가능(UC-E)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P)	-	-	
지급시기	매수시	환매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위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위 범위 내에서 선취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주2) 후취판매수수료는 위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위 범위내에서 후취판매수수료를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에게 사전에 통보합니다. 후취

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에서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으며 이익분배에 따른 재투자 좌수의 환매분에 대하여는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 비용	증권 거래비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85	1.00	0.06	0.025	1.9350	0.0016	1.9366	1.01	1.9417	-
수수료선취-온라인(A-E)	0.85	0.50	0.06	0.025	1.4350	0.0005	1.4355	0.63	1.4406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보수체감(C1)	0.85	1.50	0.06	0.025	2.4350	-	2.4350	-	2.4350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보수체감(C2)	0.85	1.40	0.06	0.025	2.3350	-	2.3350	-	2.3374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보수체감(C3)	0.85	1.30	0.06	0.025	2.2350	-	2.2350	-	2.2350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보수체감(C4)	0.85	1.20	0.06	0.025	2.1350	-	2.1350	-	2.1402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보수체감(C5)	0.85	1.10	0.06	0.025	2.0350	-	2.0350	-	2.0401	-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0.85	1.00	0.06	0.025	1.9350	0.0013	1.9363	0.88	1.941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 법안100억(C-F)	0.85	0.04	0.06	0.025	0.9750	-	0.9750	-	0.975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100억, 법안50억(C-I)	0.85	0.30	0.06	0.025	1.2350	-	1.2350	-	1.235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C-W)	0.85	-	0.06	0.025	0.9350	-	0.9350	-	0.9350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계열사자금(C-S)	0.85	0.03	0.06	0.025	0.9650	-	0.9650	-	0.9650	-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전환가능(UA)	0.85	0.92	0.06	0.025	1.8550	-	1.8550	-	1.855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전환가능(UC-E)	0.85	1.00	0.06	0.025	1.9350	-	1.9350	-	1.9403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P)	0.85	0.80	0.06	0.025	1.7350	-	1.7350	-	1.7400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P-E)	0.85	0.40	0.06	0.025	1.3350	-	1.3350	-	1.3401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85	0.35	0.06	0.025	1.2850	0.0001	1.2851	-	1.2902	-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기타 비용	총보수· 비용	동종유형 총보수	합성 총보수 비용	증권 거래비용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0.85	0.20	0.06	0.025	1.1350	-	1.1350	-	1.1350	-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직연금(P)	0.85	0.75	0.06	0.025	1.6850	-	1.6850	-	1.6850	-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u>참조</u> )	-	-	-	사유 발생시 ( <u>참조</u>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직전 회계연도(2020.11.26 ~ 2021.11.25)의 기타비용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2)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2020.11.26 ~ 2021.11.25)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으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집합투자업자보수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하위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인 JF Asset Management Limited에게 지급되는 운용보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투자신탁에서 지급되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별도로 지급합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 비용을 의미합니다.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예상수수료 및 보수는 투자기간별로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 천원)

종류 수익증권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317	523	740	1,207	2,593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7	361	523	871	1,90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250	501	754	1,262	2,73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199	408	627	1,100	2,50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법인100억(C-F)	100	205	315	552	1,2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100억, 법인50억(C-I)	127	260	399	699	1,5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96	196	302	530	1,20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계열사자금(C-S)	99	203	312	547	1,244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UA)	290	490	699	1,151	2,49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전환가능(UC-E)	199	408	627	1,099	2,5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178	366	562	985	2,24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137	282	433	759	1,728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132	271	417	731	1,66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116	238	367	643	1,46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P)	173	354	544	954	2,172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종류 A 수익증권은 1.2% 및 종류 A-e 수익증권은 0.6%로 가정) 및 모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및 기타비용을 포함한 합성 총보수 및 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종류S 수익증권은 환매시점에 후취판매수수료 부담여부 및 후취판매수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류S 수익증권의 후취판매수수료는 반영하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 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수익자에게 이익금에서 제반 조세 등을 공제한 후 금전으로 분배하며,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가 달리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의 마지막 영업일(당일 포함)로부터 8영업일 전에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 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0'(零)보다 적은 경우에도 이익금 분배를 유보합니다.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 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신탁계약에 따라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이익분배금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날)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을 판매회사에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 나. 과세

###### (1)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투자자들은 수익증권의 매입, 보유, 전환, 양도, 환매 및 기타 분배 등(이하 "관련 사건")에 대해 적용되는 거주지 혹은 설립지 법률에 의한 세금에 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투자신탁 또는 본 문서의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어떠한 당사자도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과세결과에 대하여 보증 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과세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투자신탁과 관련 당사자들은 관련 사건에 따른 과세결과나 관련 사건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야기되는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

이 없음을 밝힙니다.

다음 설명은 본 문서 작성일 당시의 세금관련 한국법과 세무관행에 근거한 것이며 그 내용 및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설명은 투자신탁의 수익자들이 한국 거주자인 개인임을 전제로 한 전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모든 유형의 투자자들의 과세결과를 설명하지는 않으므로 이에 전적으로 의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의 2단계로 나누어집니다.

**(2)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은 한국 세제 목적상 도관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투자신탁 자체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신탁이 몇몇 외국 법역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투자처분으로 인한 이득, 기타 소득은 소득세, 원천세 또는 기타 세금의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세법의 외국 납부 세액공제 목적상, 법에 따른 투자신탁은 법인으로 취급되며 따라서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1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국외원천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 세액은 아래 공식에 의하여 환급됩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X 환급비율

- 환급비율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 소득

-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취득세, 등록면허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또는 증권거래세 등 투자재산의 매입과 보유에 관련하여 투자신탁이 지급하는 기타 세금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만일 이 투자신탁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한국에서 부과된 증권거래세,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는 면제 내지 감면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신탁이 분배하는 이익과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양도(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함)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및 “한화펀드 엄브렐라 클래스”의 다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에 따른 이익(기존 수익증권의 환매이익-기존 수익증권의 매입비용)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해당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 및 평가 이익은 거주자 개인의 경우 과세대상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4)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법인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5)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CP/CP-E/S-P/P 클래스 가입자**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하여, 이하 '연금계좌'라 합니다)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 등으로 과세합니다. 관련 사항은 판매회사의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설정약관" 또는 관련 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좌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및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단,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p>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 만원 이내</p> <p>② 상기 '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p> <p>③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p> <p>[세액공제]</p> <p>-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p>
연금 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 과세 한도	1,200만원 (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 외 수령 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 가산	없음

세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재지변</li> <li>-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li> <li>-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li> <li>-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li> <li>-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li> </ul>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구분	
납입요건	





	한 화 차 이 자 투 자 신탁 ( 주 식 - 재 간 접 형 ) 의 공 고
수령요건	5 5 세 C 1 C 1 세 C 1 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0
1	100
2	100
3	100
4	100
5	100
6	100
7	100
8	100
9	100
10	100
11	100
12	100
13	100
14	100
15	100
16	100
17	100
18	100
19	100
20	100
21	100
22	100
23	100
24	100
25	100
26	100
27	100
28	100
29	100
30	100
31	100
32	100
33	100
34	100
35	100
36	100
37	100
38	100
39	100
40	100
41	100
42	100
43	100
44	100
45	100
46	100
47	100
48	100
49	100
50	100
51	100
52	100
53	100
54	100
55	100
56	100
57	100
58	100
59	100
60	100
61	100
62	100
63	100
64	100
65	100
66	100
67	100
68	100
69	100
70	100
71	100
72	100
73	100
74	100
75	100
76	100
77	100
78	100
79	100
80	100
81	100
82	100
83	100
84	100
85	100
86	100
87	100
88	100
89	100
90	100
91	100
92	100
93	100
94	100
95	100
96	100
97	100
98	100
99	100
100	1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자
	차
	한
	화
	차
	이
	나
	주
	권
	자
	투
	자
	신탁
	(
	주
	식
	-
	재
	간
	접
	형











	연 금 외 수 령 시 과 세
연금외 수령시 과세	가 타 스 트 리 크 사 회 1 6 · 5 9 ( 가 타 스 트 리 크 사 회 1 6 · 5 9 )
해지가산세	연 금 외 수 령 시 과 세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 가 타 스 트 리 크 사 회 1 6 · 5 9 ( 가 타 스 트 리 크 사 회 1 6 · 5 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	---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전환시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이 투자신탁의 UA클래스 또는 UC-E클래스 수익증권을 “한화 펀드 엄브렐러 클래스”의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UA클래스 또는 UC-E클래스 수익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시 수익증권의 매도 이익(기존 수익증권의 환매이익- 기존 수익증권의 매입비용)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전환시 수익증권의 매도이익 중 과세소득 부분을 판매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수익자에 대한 과세**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합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는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을 통하여 해외상장주식(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해외상장주식을 말하며, 이하 “해외상장주식”이라 함)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을 투자합니다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하는 해외상장주식(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해외상장주식을 말하며, 이하 “해외상장주식”이라 함)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은 해당 투자자의 과세대상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 합니다.

그러나,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헛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 등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이익이 없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인 해외자산의 환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헛지 거래로부터 발생한 손익, 해외상장주식 이외의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 및 해외상장주식의 배당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환헛지 대상 해외자산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환헛지 거래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 과세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국내 거주자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세제혜택 관련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판매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주요 내용
투자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도	1인당 3천만 원(투자자가 금융회사 등에서 가입한 모든 해외주식투자 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된 금액을 합산함)
대상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을 투자자의 과세대상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
세제혜택적용기간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날로부터 10년까지

**(8) 미국인 수익자에 대한 과세**

미국 세법(US Internal Revenue Code, the "IRC")상 본 집합투자기구는 수동적 외국 투자회사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에 속합니다. 미국 세법상 수동적 외국 투자회사에 관한 조항은 미국 투자자(수동적 투자회사에 직접 투자하거나 또는 그 회사의 보관회사나 판매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동적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미국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미국 투자자들은 IRC § 1296에 따라 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시가 평가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거나 IRC §1294에 따라 본 집합투자기구를 Qualified Electing Fund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본 집합투자기구는 수동적 투자회사에 관한 정보를 미국인 수익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뿐더러 제공할 수 없습니다.

**(9) 금융정보자동교환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AEOI") / 공통보고기준 (Common Reporting Standard, "CR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 사안에 관한 금융정보자동교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동 기준에 따라 양자간 또는 다자간 AEOI 협정을 체결한 관할지들은 해당 관할지에 거주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입니다. AEOI/CRS에 따른 정보 보고 및 교환의 범위와 적용은 각 관할지 현지의 AEOI/CRS 시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5년 12월 16일을 기준으로, 호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케이만 아일랜드,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및 영국을 포함한 77개 국가가 다자간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홍콩은 적절한 국가들과 양자간 AEOI 협정을 체결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AEOI/CRS의 시행이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투자자 자신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 조세 전문가로부터 각자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계좌와 관련된 과세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정부 정책의 변경 및 개별 가입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고,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4 기( 2020.11.26 - 2021.11.25 )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3 기( 2019.11.26 - 2020.11.25 )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2 기( 2018.11.26 - 2019.11.25 )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4기	제 13기	제 12기
	( 2021.11.25 )	( 2020.11.25 )	( 2019.11.25 )
운용자산	5,402,205,942	5,206,805,061	7,100,146,543
증권	5,310,642,187	5,121,505,434	6,932,790,760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91,563,755	85,299,627	167,355,783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0,249,050	113,757,388	116,244,841
자산총계	5,412,454,992	5,320,562,449	7,216,391,384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9,715,290	112,773,414	6,885,380
부채총계	9,715,290	112,773,414	6,885,380
원본	3,400,651,557	3,055,240,606	6,720,380,881
수익조정금	211,935,358	-396,493,689	147,063,359
이익잉여금	1,790,152,787	2,549,042,118	342,061,764
자본총계	5,402,739,702	5,207,789,035	7,209,506,004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4기	제 13기	제 12기
	( 2020.11.26 - 2021.11.25 )	( 2019.11.26 - 2020.11.25 )	( 2018.11.26 - 2019.11.25 )
운용수익	-455,341,729	2,321,611,284	1,529,098,229
이자수익	285,557	606,687	1,683,909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455,627,286	2,321,004,597	1,527,414,320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0	0	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0	0	0
당기순이익	-455,341,729	2,321,611,284	1,529,098,229
매매회전율	0.00	0.00	0.00

나.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목	제14기( 2021.11.25 )		제13기( 2020.11.25 )		제12기( 2019.11.25 )	
	금	액	금	액	금	액
<b>자 산</b>						
<b>운 용 자 산</b>						
현금및예치금		91,563,755		85,299,627		167,355,783
1. 현금및현금성자산	91,563,755		85,299,627		167,355,783	
2. 예치금						
3. 증거금						
<b>대출채권</b>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b>유가증권</b>						
1. 지분증권		5,310,642,187		5,121,505,434		6,932,790,760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5,310,642,187		5,121,505,434		6,932,790,760	
4. 기타유가증권						
<b>파생상품</b>						
1. 파생상품						
<b>부동산과 실물자산</b>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b>기타운용자산</b>						
1. 임차권						
2. 전세권						
<b>기 타 자 산</b>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0,249,050		113,757,388		116,244,841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28,684		12,520		99,287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10,220,366		113,744,868		116,145,554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b>자 산 총 계</b>		<b>5,412,454,992</b>	<b>5,320,562,449</b>		<b>7,216,391,384</b>	
<b>부 채</b>						
<b>운 용 부 채</b>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b>기 타 부 채</b>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9,715,290		112,773,414		6,885,380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9,715,290		112,773,414		6,885,380	
4. 수수료미지급금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b>부 채 총 계</b>		<b>9,715,290</b>	<b>112,773,414</b>		<b>6,885,380</b>	
<b>자 본</b>						
1. 원 본		3,400,651,557		3,055,240,606		6,720,380,881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2,002,088,145		2,152,548,429		489,125,123
(발행좌수 당기: 3,400,651,557	좌	이익잉여금	1,790,152,787	2,549,042,118	342,061,764	
전기: 3,055,240,606	좌	수익조정금	211,935,358	-396,493,689	147,063,359	
전전기: 6,720,380,881	좌)					
(기준가격 당기: 1,588.51	원					
전기: 1,704.08	원					
전전기: 1,059.56	원)					
<b>자 본 총 계</b>		<b>5,402,739,702</b>	<b>5,207,789,035</b>		<b>7,209,506,004</b>	
<b>부 채 와 자 본 총 계</b>		<b>5,412,454,992</b>	<b>5,320,562,449</b>		<b>7,216,391,384</b>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14기( 2020.11.26-2021.11.25)		제13기( 2019.11.26-2020.11.25)		제12기( 2018.11.26-2019.11.25)	
	금 액		금 액		금 액	
<b>운 용 수 익</b>						
<b>1. 투자수익</b>		285,557	606,687	1,683,909		
1. 이 자 수 익	285,557		606,687	1,683,909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b>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b>		698,603,404	2,328,557,811	1,608,869,124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1,233,050,843	1,468,170,122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698,603,404		1,095,506,968	140,699,002		
<b>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b>		1,154,230,690	7,553,214	81,454,804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1,154,127,584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103,106		7,553,214	81,454,804		
<b>운 용 비 용</b>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b>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b>		-455,341,729	2,321,611,284	1,529,098,229		
<b>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b>		-0.133898378	0.759878381	0.227531483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억좌, 억원)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0.11.26 - 2021.11.25	26	38	15	23	10	16	31	41
2019.11.26 - 2020.11.25	66	61	34	37	74	78	26	38
2018.11.26 - 2019.11.25	63	46	25	24	22	20	66	6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0.11.26 - 2021.11.25	4	6	3	6	3	5	4	6
2019.11.26 - 2020.11.25	6	5	5	6	6	7	4	6
2018.11.26 - 2019.11.25	7	6	1	1	3	2	6	5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UA)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0.11.26 - 2021.11.25	0	0	0	0	0	0	0	0
2019.11.26 - 2020.11.25	0	0	0	0	0	0	0	0
2018.11.26 - 2019.11.25	0	0	0	0	0	0	0	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전환가능(UC-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0.11.26 - 2021.11.25	0	0	0	0	0	0	0	0
2019.11.26 - 2020.11.25	0	0	0	0	0	0	0	0
2018.11.26 - 2019.11.25	0	0	0	0	0	0	0	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0.11.26 - 2021.11.25	0	0	0	0	0	1	0	0
2019.11.26 - 2020.11.25	0	0	0	0	0	0	0	0
2018.11.26 - 2019.11.25	0	0	0	0	0	0	0	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0.11.26 - 2021.11.25	0	0	1	1	0	0	1	1
2019.11.26 - 2020.11.25	0	0	0	0	0	0	0	0
2018.11.26 - 2019.11.25	0	0	0	0	1	1	0	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0.11.26 - 2021.11.25	0	0	0	0	0	0	0	0
2019.11.26 - 2020.11.25	0	0	0	0	0	0	0	0
2018.11.26 - 2019.11.25	0	0	0	0	0	0	0	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0.11.26 - 2021.11.25	0	0	0	0	0	0	0	0
2019.11.26 - 2020.11.25	0	0	0	0	0	0	0	0
2018.11.26 - 2019.11.25	0	0	0	0	0	0	0	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0.11.26 - 2021.11.25	1	2	0	0	0	1	1	2
2019.11.26 - 2020.11.25	2	3	0	0	1	2	1	2
2018.11.26 - 2019.11.25	3	3	0	0	1	2	2	3

수수료선취-온라인(A-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0.11.26 - 2021.11.25	1	3	1	3	1	3	1	2
2019.11.26 - 2020.11.25	1	2	2	3	2	3	1	3
2018.11.26 - 2019.11.25	3	3	0	0	2	3	1	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0.11.26 - 2021.11.25	1	2	2	5	2	5	1	1
2019.11.26 - 2020.11.25	0	0	1	1	0	0	1	2
2018.11.26 - 2019.11.25	0	0	0	0	0	0	0	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0.11.26 - 2021.11.25	0	0	0	0	0	0	0	0
2019.11.26 - 2020.11.25	0	0	0	0	0	0	0	0
2018.11.26 - 2019.11.25	0	0	0	0	0	0	0	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0.11.26 - 2021.11.25	0	0	0	0	0	0	0	0
2019.11.26 - 2020.11.25	0	0	0	0	0	0	0	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0.11.26 - 2021.11.25	0	0	0	0	0	0	0	1
2019.11.26 - 2020.11.25	0	0	0	0	0	0	0	0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이 투자신탁의 세전기준 운용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용실적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기하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이 운용실적은 본 문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된 것으로 투자자의 실제 투자시점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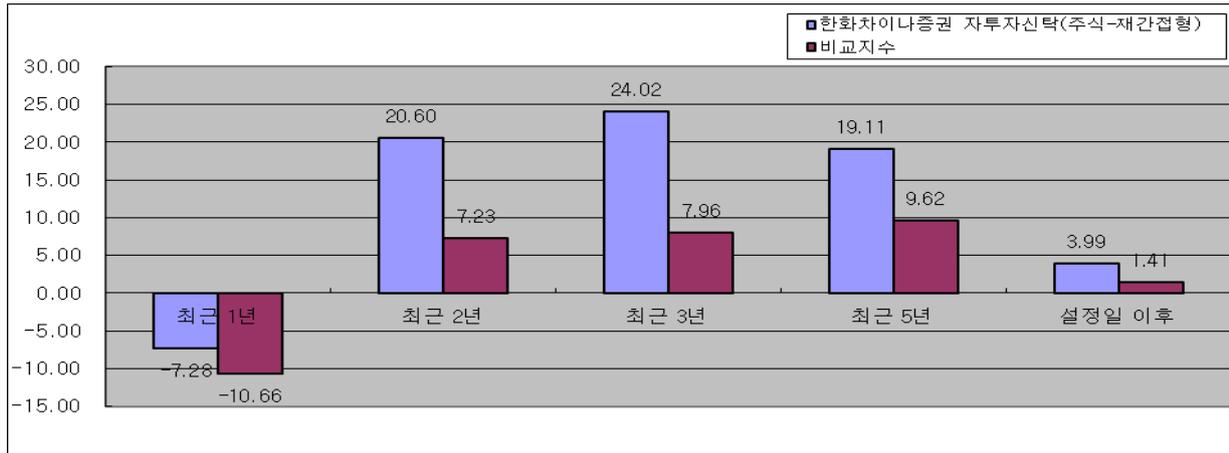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1213 ~ 21.1212	191213 ~ 21.1212	181213 ~ 21.1212	161213 ~ 21.1212	071126 ~ 21.1212
한화차이나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728	2060	2402	1911	399
비교지수	-1066	723	796	962	141
수익율변동성(%)	2464	2625	2368	2226	2653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909	1833	2170	1688	199
비교지수	-1066	723	796	962	141
수익율변동성(%)	2464	2625	2368	2226	265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909	1833	2169	1687	226
비교지수	-1066	723	796	962	105

수익률변동성(%)	2464	2625	2368	2226	2652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UA)	-729	1991	2286	1760	724
비교지수	-1066	723	796	962	367
수익률변동성(%)	2464	2625	2368	2226	2415
수수료미징구-온라인-전환가능(UC-E)	-909	1834	2171	1688	763
비교지수	-1066	723	796	962	442
수익률변동성(%)	2464	2625	2368	2226	24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2419	-1469	-228	017	-251
비교지수	-2228	-1996	-11.17	-249	-228
수익률변동성(%)	2464	2625	2368	2226	243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924	15.15	450	658	264
비교지수	-1066	341	-3.75	232	062
수익률변동성(%)	2464	2625	2368	2226	244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918	1822	2158	1676	1001
비교지수	-1066	723	796	962	483
수익률변동성(%)	2464	2625	2368	2226	2236
수수료선취-온라인(A-E)	-863	1891	2229	1745	932
비교지수	-1066	723	796	962	514
수익률변동성(%)	2464	2625	2368	2226	235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849	1909	2247	1762	1148
비교지수	-1066	723	796	962	666
수익률변동성(%)	2464	2625	2368	2226	232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758	1982	2305	1802	1600
비교지수	-1066	723	796	962	846
수익률변동성(%)	2464	2625	2368	2226	224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890				1742
비교지수	-1066				640
수익률변동성(%)	2464				265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853				1436
비교지수	-1066				240
수익률변동성(%)	2464				2691

주1) 비교지수 MSCI China 10/40 Index (Total Return Net) 90% + 콜금리 10% 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2) 비교지수는 2019년 6월 27일자로 MSCI China Index(Local) 90% + 콜금리 10%에서 MSCI China 10/40 Index (Total Return Net) 90% + 콜금리 10%로 변경되었습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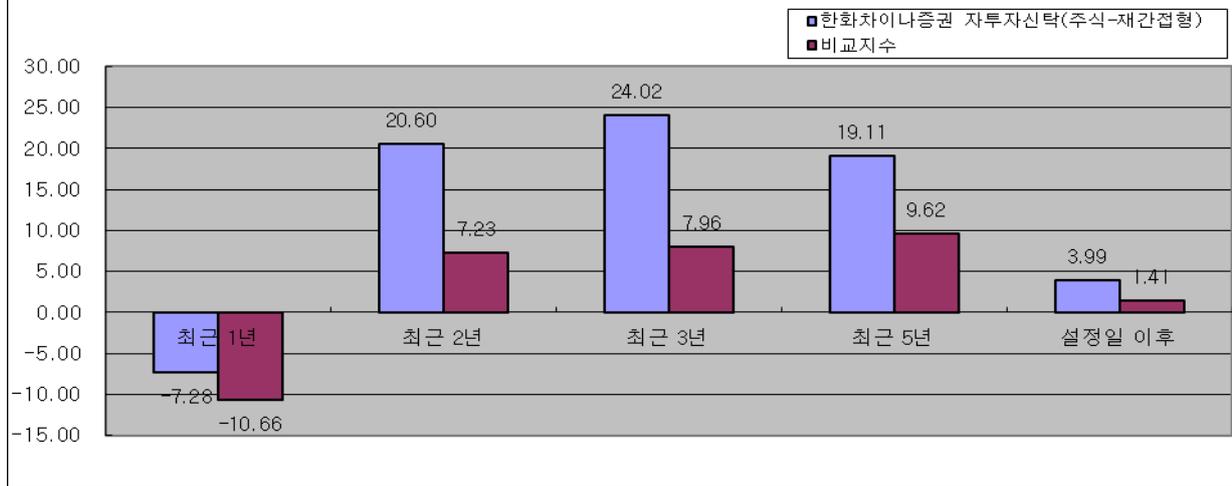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1213 ~ 21.1212	191213 ~ 20.1212	181213 ~ 19.1212	171213 ~ 18.1212	161213 ~ 17.1212
한화차이나증권 자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728	5678	3119	-1751	5235
비교지수	-1066	2866	943	-1156	4223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909	5394	2873	-1912	4960
비교지수	-1066	2866	943	-1156	4223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909	5393	2873	-1913	4959
비교지수	-1066	2866	943	-1156	4223
수수료선취-오프라인-전환가능(UA)	-729	5503	2898	-1902	4971
비교지수	-1066	2866	943	-1156	422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전환가능(UC-E)	-909	5396	2874	-1912	4960
비교지수	-1066	2866	943	-1156	42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2419	-402	2824	-1875	3306
비교지수	-2228	-1757	943	-1156	42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924	4604	-1396	-1929	4932
비교지수	-1066	1966	-1663	-1156	42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918	5381	2860	-1921	4946
비교지수	-1066	2866	943	-1156	4223
수수료선취-온라인(A-E)	-863	5467	2936	-1871	5027
비교지수	-1066	2866	943	-1156	4223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849	5490	2955	-1858	5051
비교지수	-1066	2866	943	-1156	422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758	5525	2979	-1846	5072
비교지수	-1066	2866	943	-1156	42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890	5611			
비교지수	-1066	3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853	4576			
비교지수	-1066	1906			

주1) 비교지수 MSCI China 10/40 Index (Total Return Net) 90% + 콜금리 10% 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2) 비교지수는 2019년 6월 27일자로 MSCI China Index(Local) 90% + 콜금리 10%에서 MSCI China 10/40 Index (Total Return Net) 90% + 콜금리 10%로 변경되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1.11.25 현재/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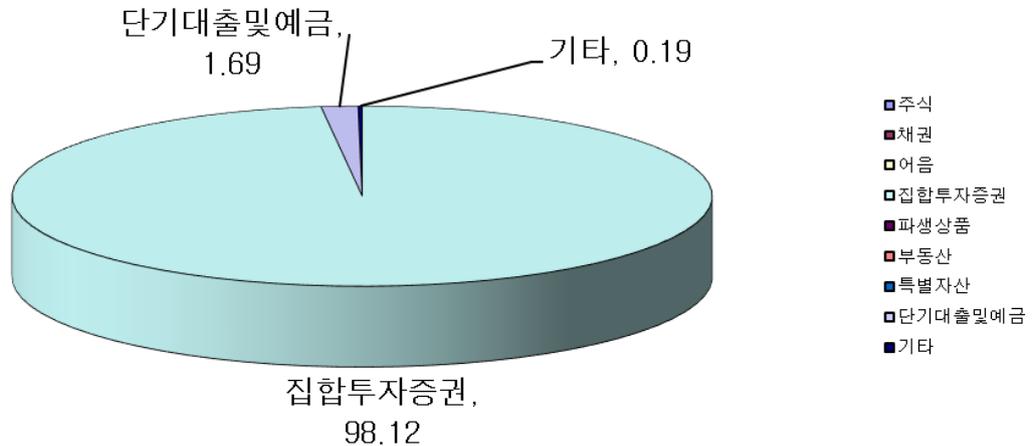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53	0	0	0	0	0	1	0	54
	(0.00)	(0.00)	(0.00)	(98.12)	(0.00)	(0.00)	(0.00)	(0.00)	(0.00)	(1.69)	(0.19)	(100.00)
합계	0	0	0	53	0	0	0	0	0	1	0	54
	(0.00)	(0.00)	(0.00)	(98.12)	(0.00)	(0.00)	(0.00)	(0.00)	(0.00)	(1.69)	(0.19)	(100.00)

(주1) ( ) 내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대비 비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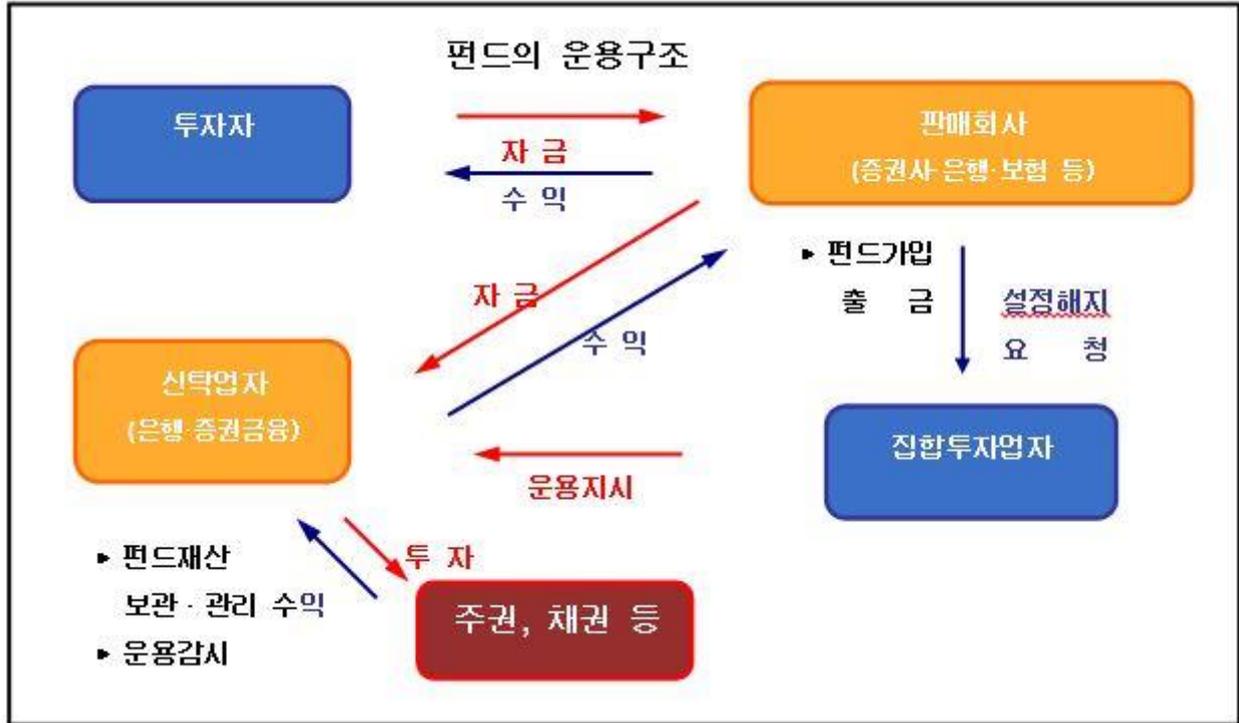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50 한화금융센터63 (전화) 02-6950-0000	
홈페이지	www.hanwhafund.com	
회사연혁	2011.09.19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출범 (한화투자신탁운용과 푸르덴셜자산운용의 합병)	
	2018.06.04 제이피모간자산운용코리아(주) 집합투자업 사업부문 분할합병	
	푸르덴셜 자산운용	1982.06 국민투자신탁 설립 1998.02 국민투자신탁운용 설립 (국민투자신탁에서 운용조직 분리) 1999.02 현대투자신탁운용으로 상호 변경 2004.02 미국 Prudential Financial 자회사로 편입, 푸르덴셜자산운용으로 상호 변경 2010.06 한화그룹 계열사로 편입
한화투자 신탁운용	1988.04 제일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96.08 한화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자본금	5,700억	

나. 주요 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항목	제33기 (‘20.12.31)	제32기 (‘19.12.31)	항목	제33기 (20.1.1 ~20.12.31)	제32기 (19.1.1 ~19.12.31)
자 산			영업수익	114,549	110,711
현금및현금성자산	44,086	12,658	영업비용	87,507	79,076
예치금	1,931	-	영업이익	27,042	31,635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292,406	11,915	영업외수익	825	5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104,117	89,786	영업외비용	1,151	7,215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	247,521	41,122	법인세차감전	26,716	24,478
대출채권	1,064	1,091	법인세비용	6,080	7,406
유형자산	16,777	16,672	<b>당기순이익</b>	<b>20,636</b>	<b>17,072</b>
무형자산	11,514	11,445			
이연법인세자산	3,484	5,403			
기타금융자산	44,918	41,835			
기타자산	1,123	1,078			
<b>자 산 총 계</b>	<b>768,941</b>	<b>233,005</b>			
부 채					
예수부채	1,931	-			
충당부채	1,132	1,056			
순확정급여부채	-1,076	-148			
당기법인세부채	3,832	4,496			

기타금융부채	28,401	26,799		
기타부채	1,425	983		
<b>부 채 총 계</b>	<b>35,645</b>	<b>33,186</b>		
자 본				
자본금	570,000	60,000		
기타불입자본	5,868	8,324		
기타자본구성요소	-8,934	-14,232		
이익잉여금	166,362	145,727		
<b>자 본 총 계</b>	<b>733,296</b>	<b>199,819</b>		
<b>부 채 및 자 본 총 계</b>	<b>768,941</b>	<b>233,005</b>		

라. 운용자산 규모

(2021.12.12 현재, 단위: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 부동산파 생	특별자산 및특별자 산파생	혼합자산 및혼합자 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37,906	37,132	8,167	0	29,061	10,270	0	32,743	98,680	8,448	89,051	351,457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아이타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70 (02) 2168-0400
홈페이지	www.shinhanaitas.com

(2)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국민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02) 2073-7114

홈페이지 주소	www.kbstar.com
---------	----------------

**(2)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증권상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 ① 신탁업자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구 분	한국자산평가	NICE P&I	KIS Pricing Inc.	FN 자산평가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02)2251-1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 길 38 02)3215-14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02-721-5300
홈페이지 주소	www.koreaap.com	www.nicepni.com	www.bond.co.kr	www.fnpricing.com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합니다.

##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수익자총회등

##### (1) 수익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찬반비율에 비례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 총회의 소집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지역에서 개최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만약 1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냅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② 의결권 행사방법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 제6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 제7항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일 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법 제190조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아래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부분 참조)은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만 구성되는 수익자총회에 위 의결권 행사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봅니다.

###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 (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함)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등은 제외)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현재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이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익자총회 결의사항은 없습니다.

####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 제1항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며,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반대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키지 아니합니다.

#### 나. 잔여재산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환금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염려되는 경우,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교부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 투자신탁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신탁업자 등 금융투자업자는 관련 법령, 신탁계약, 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수익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수익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 등이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 포함)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수시공시의 절차에 따라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이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① 영업보고서 제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 ② 결산서류 제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되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공시 또는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것으로 투자자에게의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편발송으로 교부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하 "기준일")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매매회전을

###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포함)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법 제247조 제5항에 정해진 사항
- 법 시행령 제270조 제2항에 정해진 사항 등

###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나. 수시공시

###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함)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합병, 분할, 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등은 제외)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모투자신탁에 관련한 사항도 포함)발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며, 또한 판매회사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법 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이 정하는 주식(주권상장 법인이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할 경우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2019.11.30 ~ 2020.12.01)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2020.12.13 ~ 2021.12.12)**

-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구 분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가. 증권 거래	평가항목	운용에 대한 기여도	주문체결 능력	비용 또는 수익	정보제공 및 settlement	합계
	항목 가중치	50%	15%	10%	25%	100%
나. 장내 파생상품 거래	* 각 평가항목은 5 척도(A, B, C, D, E)로 평가 * 각 등급별 투자중개업자의 비율은 A(15%), B(20%), C(30%), D(20%), E(15%)를 원칙, 상하 5% 범위 이내 조정 * 각 평가자가 평가한 5 척도의 환산점수는 A(10 점), B(8 점), C(6 점), D(4 점), E(2 점) * 각 평가항목별 평가치를 항목가중치로 가중 평균하여 합산. * 각 거래 자산별로 일정한 수의 범위 내에서 거래 가능한 투자중개업자로 선정					

\* 증권, 장내파생상품 중 일부 자산은 상기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선정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p>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p> <p>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p>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